

미래융합기술연구원 운영규정(4-2-12)

개정 : 2018. 08. 14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원은 건양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원(Institute of Future Convergence Technologies)이(이하 “본 연구원”이라 한다)라 칭하며,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① 본 연구원은 인간의 건강한 삶과 식량 확보, 에너지, 환경, 안전 등 우리 생활 여러 곳에 미치게 될 미래융합기술에 대한 기술트렌드 파악, 연구과제 수립 및 제안, 연구소 구성을 통한 핵심기술 연구 등을 추진해 인류의 운택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.

② 본 연구원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연구과제 성과를 축적·상호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

③ 본 연구원은 정부사업, 공공기관사업, 민간분야사업 등, 새로운 산업구조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신규 사업 수주에 필요한 인프라를 사전 구축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

④ 교육과 산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창조적인 융합을 선도하고자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 한다.

① 교내 기술연구과제 축적·상호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

② 사물인터넷(IOT: Internet of Things), 메디바이오(Medi-Bio), 3D 융합기술, 블록체인 의료빅데이터, 의료건축, 인공지능, 빅데이터분야 등의 미래융합기술에 대해 정부사업, 공공기관사업, 민간분야사업 등 사전 예측을 통한 인프라구축 및 신규 사업 유치(개정 2018.01.16., 2018.08.14.)

③ 교육과 산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창조적인 융합교육 사업

④ 연구원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직) 본 연구원에는 연구소(IOT연구소, 메디바이오연구소, 3D 융합기술연구소, 블록체인 의료빅데이터연구소, 의료건축연구소, 인공지능연구소, 빅데이터연구소) 그

리고 기획부를 둔다.(개정 2018.01.16., 2018.08.14.)

- 제5조(임원 및 임기) ① 본 연구원에 원장, 연구소장, 기획실장, 기술지원팀장, 교육지원팀장을 둘 수 있으며, 고문 및 자문위원,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각 소에는 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원장은 본교 교원 및 외부인 중에서 본 연구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원을 대표하고,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기획 업무를 총괄하며, 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기획실장은 대외협력과 홍보업무와 연구원 사업의 기획 및 재정관리 업무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기술지원팀장과 교육지원팀장은 각각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전반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고문 및 자문위원, 전문위원은 연구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원장이 임명한다.
-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연구원

- 제6조(연구원) ① 연구원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, 위촉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연구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- 제7조(구성 및 회의)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및 연구소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(개정 2018.01.16., 2018.08.14.)
- ③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③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⑤ 기타 연구원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
제 5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본 연구원의 재정은 학교 및 산학협력단 지원,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회계연도)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1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1월 16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8월 14일부로 시행한다.